

1. 개정이유

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 정보를 공표하고,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화장품법」이 개정(법률 제20901호, 2025. 4. 1. 공포)됨에 따라,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 정보 및 게시 방법, 검사의 방법 등을 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정보에 대한 공표 방법 및 내용(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제품명, 제조국, 제품사진 등의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

나.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 방법(안 제30조의2 신설)

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표시사항 등에 대한 확인 검사와 물리·화학적, 미생물학적 분석 검사 등 검사 방법을 정함

다.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내용 등(안 제30조의3 신설)

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자에 대한 특성, 구매실태, 사용실태 등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우편번호 28159)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 의료 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
- 전자우편: sunmilee@korea.kr
- 팩스: 043-719-3400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(전화 (043) 719 - 3409, 팩스 (043) 719 - 34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4의 제목 “(실태조사의 실시)”를 “(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실태조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”를 “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실태조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실태조사”를 각각 “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실태조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실태조사의”를 “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실태조사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실태조사”를 “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실태조사”로 한다.

제10조의5제2항 중 “실태조사”를 “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실태조사”로 한다.

제2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

1. 제품명
2. 제조국

3. 제조회사

4. 제품사진

5. 원료 또는 성분

6.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
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)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확인 검사: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기재·표시 사항이나 사이버몰 등에 게재된 정보의 확인
2. 분석적 검사: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물리적·화학적·미생물학적 방법의 검사

제30조의3(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)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자의 성별,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
2.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종류, 구매빈도, 구매동기 등 구매실태에 관한 사항
3.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사용량, 사용빈도, 사용기간 등 사용실태에

관한 사항

4.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제품명 등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
 5.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소비자 피해 유형,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에 관한 사항
 6.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는 통계조사,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4(<u>실태조사의 실시</u>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<u>실태조사</u> (이하 “ <u>실태조사</u> ”라 한다)를 5년마다 실시한다.	제10조의4(<u>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실태조사</u>) ① ----- ----- <u>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실태조사</u> -----.
② <u>실태조사</u>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6. (생 략)	② <u>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실태조사</u>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<u>실태조사</u> 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, 공공기관, 법인·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	③ ----- <u>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실태조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<u>실태조사</u> 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	④ ----- <u>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실태조사</u> 의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<u>실태조사</u> 의 대상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	⑤ ----- ----- <u>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실태조사</u> ----- -----

장이 정한다.

제10조의5(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.

③ ~ ⑤ (생 략)

제28조(위해화장품의 공표) ① ~ ③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----.

제10조의5(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실태조사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위해화장품의 공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

1. 제품명

2. 제조국

3. 제조회사

4. 제품사진

5. 원료 또는 성분

6.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

제30조의2(직접구매 해외화장품

<신 설>

에 대한 검사)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확인 검사: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기재·표시 사항이나 사이버몰 등에 게재된 정보의 확인
2. 분석적 검사: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물리적·화학적·미생물학적 방법의 검사

제30조의3(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)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자의 성별,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
2.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종류, 구매빈도, 구매동기 등 구매실태에 관한 사항
3.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사용

량, 사용빈도, 사용기간 등 사
용실태에 관한 사항

4.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제품
명 등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

5.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소비
자 피해 유형, 피해 경험 등
피해 사례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화장
품에 대한 정책 수립에 활용
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
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사항

②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
조사는 통계조사, 문헌조사 또
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
시할 수 있다.